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법령에따른의견청취의견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,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에서 위탁하여 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함. (안 제6조)
가.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
- 공단 직원의 정원을 증원함. (안 제20조)
가. 정규인력 31명을 44명으로 조정 (증 13명)
 - 일반직 : 8명(행정:3명, 기계:2명, 화공·환경:2명, 전기:1명)
 - 기능직 : 5명(전기:1명, 기계:2명, 조무:2명)
- 나. 비정규직 인력 68명을 72명으로 조정 (증 4명, 분뇨및축산폐수 관리원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95조 (사무의 위임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94·12·20>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

제5조 (정관)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8조 (권한의 위탁)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나. 내용타당성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제42회 임시회(2000. 5. 22) 및 제46회 임시회(2000. 10. 23)시 각각 승인된 안건으로,
-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전반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 심

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였는바,

-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(2000. 12. 13) 당시 황의형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내용으로 당초에는 분뇨처리시설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시공사인 해동종합건설(주)에 각각 분리하여 위탁운영 계획이었으나,
- 한 부지내 2개의 시설을 이원화하여 각각 운영시 운영요원 별도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탁관리비가 증가함은 물론 동 시설의 효율성 및 경제성, 안정성 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,
-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관리 경험이 있고 기술인력이 확보된 해동종합건설(주)와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위탁운영 관리할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.
- 또한, 공단 직원의 정규인력 정원을 31명에서 44명으로 13명을 증원함과 비정규인력을 68명에서 72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등 총 17명을 증원함에 있어서, 제2회 추경시 용역비 15,000천원이 편성되어 동 사업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여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바, 구체적인 인력증원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